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 우대조치 근거마련〉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1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04. 10.

다. 회 부 일 : 2025. 04.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다자녀 출산 및 양육 장려를 목적으로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하고(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방안을 마련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차등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9조의2(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①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정년) ① (생략) <u><신 설></u> ② ~ ⑥ (생략)	제30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2명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1세, 자녀가 3명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2세,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3세로 한다.</u> 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일반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에 대해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우대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¹⁾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²⁾는 인구구조 불균형과 국가경쟁력 저하,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 약화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출산·양육 장려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1) 「경찰공무원법」 상의 승진, 특별승진, 정년 규정

제15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통계청이 2025년 2월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

특히, 경찰공무원은 교대근무와 비상대기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근무여건상의 제약과 양육부담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정년 연장, 특별승진 기회 부여, 승진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통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정년 연장과 승진 우대는 모두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자녀 수에 따른 정년 차등화와 승진 우대는 동일 직종 내에서도 자녀가 없거나 적은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불임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특별승진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적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바, 자녀 수를 자격 요건으로 삼는 것은 해당 제도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둘째, 인사 운영 및 조직 관리 측면에서 정년 연장은 상위 직급의 포화를 초래하고, 그에 따라 후속 세대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감

소할 수 있다.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구조와 맞물릴 경우 승진 적체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

참고로, 동 의원이 동일한 취지로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군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지방공무원법, 경호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등 총 10개 법률 개정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바³⁾, 공무원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 방향과 각 직군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자녀의 수에 따라 승진하는 것은 업무성과와 함께 상위직으로서 업무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는 현재의 승진체계와 맞지 않고, 난임·비혼 등을 이유로 한 내부직원 간 역차별 등 형평성·공정성 문제로 현장에서의 수용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아울러, 정년연장은 민간과의 정년 형평성, 청년고용 등 정부차원의 사회적 논의·합의가 필요하며, 경찰조직 차원에서도 업무특수성 및 인력순환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

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5호, 2025.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6호, 2025.4.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9호, 2025.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6호, 2025.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2호, 2025.4.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8호, 2025.4.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07호, 2025.4.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1호, 2025.4.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714호, 2025.4.10.)

견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 경정 이하 계급별·자녀수에 따른 인원('25. 5월 기준)

구분	합계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합계	132,549	48,925	25,660	48,768	8,598	598
경정	3,277	154	601	2,107	388	27
경감	29,569	1,793	4,249	19,084	4,136	307
경위	35,576	5,041	8,022	19,034	3,257	222
경사	28,721	11,517	9,141	7,286	739	38
경장	20,779	16,219	3,315	1,168	73	4
순경	14,627	14,201	332	89	5	-

※ e-사람 시스템에 등록된 자녀 수에 따른 인원으로 부부 경찰관(통상 부부 중 1명만 입력)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최근 5년간 계급별 특진 현황

구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합계	612	2,170	822	1,118	886
(경감→) 경정	8	5	-	-	-
(경위→) 경감	183	295	187	175	135
(경사→) 경위	251	715	111	130	136
(경장→) 경사	134	695	270	350	254
(순경→) 경장	36	460	254	463	361